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2. 20.(목)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2월 20일
전문위원 이 광 희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0 - 2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0년 2월 5일
- 라. 회부일자: 2020년 2월 17일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원칙과 징수 단가를 개정하여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 선납 예외규정 축소(안 제3조제4항)
- 나. 감독업무비 적용요율 개정(안 별표 1)
- 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91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19. 11. 13. ~ 12. 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원칙과 도로복구비용 중 감독 업무비 적용 요율을 개정하여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 예외규정 축소(안 제3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삭제>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삭제>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 도로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변경(안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 산출방법>	<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 산출방법>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 업무 요율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금액 + 간접복구금액) × *요율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감독업무비 요율 범위내에서 정한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다. 종합 의견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관련 사항 조례 위임여부

- 「도로법」 제91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행위 시행자에게 도로복구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해당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¹⁾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 예외규정 축소(안 제3조제4항)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 원칙을 확대 적용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체납 발생 소지를 제거하여 도로굴착복구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19. 5. 16.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시도(市道)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선납 예외규정이 축소됨에 따라 관내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구도(區道)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파손 등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굴착복구공사를 제외하고는 ‘선허가 후납부’에서 ‘선납부 후허가’로 변경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함
- 감독업무비 산정기준 표현의 명확화 및 적용 요율 변경 (안 별표 1)
 - 도로복구비용의 감독업무비 산정기준 중 개정 전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은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의 합인 도로복구금액을 의미하므로 안 별표 1에서는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금액 + 간접복구금액)²⁾으로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비상주 감리 요율에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에 규정된 감독업무비 요율인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정한 요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 직접복구금액: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 공사 시행비

간접복구금액: 간접손케부분에 대해 도로유지관리차원에서 향후 일괄 정비를 위한 비용

- 시도(市道)와 구도(區道)간 요율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른 감독업무비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임
-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 원칙 및 감독업무비 요율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도로 굴착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이전·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건설기술용역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

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케부분 또는 간접손케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케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케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케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시행자가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 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시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